
초고령 사회의 돌봄 위기와 대안

윤자영*

초록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돌봄 공백은 시민의 건강 위협과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킨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돌봄 서비스의 질은 여전히 미흡하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의 시장화 확대와 외국인 노동자 의존 정책은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본 글은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돌봄의 사회화는 단순한 노동 시장 문제가 아니라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논의한다.

주요 용어: 돌봄 위기, 공공성, 장기요양보험제도, 돌봄노동, 초고령사회

* 충남대학교 (E-mail: jayoungy@cnu.ac.kr)

투고일: 2025.2.4./ 수정일: 2025.2.20./ 게재확정일: 2025.2.20.

I. 들어가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 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후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추세를 낙관하기는 이르다(통계청, 2024).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9.9명에 달했다. OECD 회원국의 노인 자살률은 평균 16.3명으로 한국은 그 두 배를 넘어선다(보건복지부, 2024). 출산율 하락과 노인 자살 증가, 이 두 가지 현상은 사실상 같은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돌봄 시스템의 부재는 가족과 개인에게 과도한 돌봄 부담을 지우며 불안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이 붕괴된 곳에서 약자들은 고립된다.

현대 사회에서 돌봄은 개별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되었다. 돌봄은 한 인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 단계에 걸쳐 필요하지만, 특히 2025년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한국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성숙으로 인력과 시설이 증가하였지만, 질적 수준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많은 노인들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으로 직접 돌볼 여력이 없고, 시설과 재가 요양은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설, 방문 간호, 실버타운, 지역사회거주 등 다양한 돌봄 형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의 공적 돌봄 체계는 이를 수용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서 대다수 시민들은 돌봄이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미래가 아니라 방치와 소외로 내모는 암울한 현실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돌봄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위협하는 정책 변화

가 잇따라 전개되었다. 고용안정과 처우 및 노동환경을 개선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대형 보험사의 돌봄 시장 진입 허용, 필리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 사업 추진, 특정활동(E-7) 취업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여 외국인 취업 제한 완화, 취약지역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면제 논의 등은 돌봄의 공공 책임과 역할을 축소하는 가운데 시장에 인력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돌봄노동이 저평가되고 저임금 노동으로 고착화되어 돌봄 공백이 확대되면서 심화된 돌봄 위기의 뿌리는 단순히 인력 부족에 있지 않다. 시장 원리를 강화하거나 값싼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돌봄의 공공성이 훼손되면 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되고, 특히 경제적, 지역적 취약계층은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돌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력을 확보하는 단기적 해결책이 아니라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과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돌봄이 공공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돌봄 체계를 함께 구축하며, 돌봄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돌봄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한 분배를 통해 돌봄이 시장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시민이 안정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글은 돌봄의 위기가 저출생·고령화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 속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사회화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한다.

II. 돌봄의 위기와 공공성 강화

1. 돌봄 위기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와 자본주의 체제적 모순의 접점에서 심화되고 있는 돌봄의 위기는 전 세계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24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12차 연차 총회를 개최하고 ‘괜찮은 일자리와 돌봄 경제에 관한 결의안(Decent Work and the Care Economy Resolution)’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돌봄 경제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돌봄 노동에 대한 더 나은 조건과 정책적 지원을 촉구한다(ILO, 2024). 돌봄 노동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위기 인식을 함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돌봄 위기(care crisis)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포괄한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돌봄 노동은 역사적으로 가정과 시장에서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전가되었다. 가족, 특히 여성이 돌봄을 책임지는 구조였지만, 가족구조 변화와 맞벌이 증가로 인해 이 방식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공적 영역에서도 간호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여성들이 주로 돌봄 직종에 종사한다. 이러한 성별화된 돌봄 노동은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를 제약하며 성평등 달성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돌봄 노동은 경제적으로 필수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었다. 돌봄 노동자는 낮은 임금, 비정규직 고용 형태,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노동 시장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셋째, 많은 국가에서 가족 내 무급 돌봄 노동은 공식적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정책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돌봄 노동이 공식적인 경제활동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면서 국가가 이에 대한 적극적 재정 투자를 꺼리게 되고,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경향이 강화

된다. 이러한 현실은 돌봄 노동의 경제적 기여를 은폐하거나 축소시키고, 돌봄 노동자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는데 한계를 가져왔다. 국제노동기구는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전 세계적인 과제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주 돌봄 노동자와 같은 초국적 노동 이동 현상은 국제적 규범과 협력을 더욱 요구한다. 결의안은 돌봄 위기에 대한 대응이 단순히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평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모두를 위한 돌봄 생태계 조성을 포함하여, 사회·경제적 전환기에 필요한 개혁적 의제로서 돌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시급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2. 한국의 돌봄 노동의 현실

국제노동기구의 결의안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에 대한 가족과 국가의 역할과 부담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한국 사회 현실에 맞닿아 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 돌봄의 상당 부분은 가족이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배우자와 자녀가 돌봄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내에서 노인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이들은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가족 구성원은 노인 돌봄을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도 한다.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육아휴직의 재정적 지원과 활용은 확대되어온 반면, 부모(노인)를 돌보는 제도적 지원은 미흡하다. 2020년부터 정부는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와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도입했지만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정가원 외, 2021).

한국 사회에서 노인 돌봄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동으로 급성장했다. 2008년 7월 도입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로 고령자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돌봄을 가족 내 무급 노동으로 한정하지 않고 제도화된 사회적 서비스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총 72.3만 명이며, 이 중 요양보호사는 60.1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83.2%를 차지한다. 시설 종사 요양보호사의 94.3%는 여성이다.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 역시 노인이 다수며, 약 50%가 60대이며 70대인 요양보호사 역시 12%로 나타났다(이윤경 외, 2023). 이는 노인 돌봄이 성별화, 고령화된 직업으로 고착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요양보호사의 노동 환경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열악하다(이윤경 외, 2023; 정찬미, 2024). 첫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돌봄 노동을 제도화시켰으나,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진 돌봄 노동자의 임금은 그들의 숙련도와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둘째, 노인돌봄 노동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방문 요양 돌봄을 맡는 요양보호사들은 일대일 서비스 제공에 휴가 사용이 어려운 등 노동강도가 높고 보호 장비 부족과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다. 셋째, 고용 불안정과 낮은 임금, 경력이 반영되지 않는 단일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은 돌봄 노동자들의 퇴사율을 높이고 돌봄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59.9%가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비율은 27.5%에 불과하다.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92.6시간으로, 다른 장기요양요원(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의 월평균 근무시간인 약 160시간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또한 조사 시점 기준 6개월 내 84.5%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사자가 발생했으며, 가장 많은 퇴사자가 요양보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방문요양 보호사의 퇴사율이 특히 높다(이윤경 외, 2023).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와 같은 돌봄 노동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노동조합 결성이 어렵고 단체 교섭권 행사도 제한적이다. 임금노동자로서 노동법 상 지위가 공식화되었을 뿐 근로 조건을 협상할 제도적 틀이나 힘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창립 1주년이 된 돌봄노동자 조직을 대표하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가장 중요한 요구 가운데 하나는 장기요양제도 관련한 핵심적 의사결정 기구인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추진된 돌봄의 사회화, 즉 사회서비스 정책은 돌봄에 대한 공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했지만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시장화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가 재정지원사업이지만 시장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바우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 저소득층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한다는 미명 하에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경시해왔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사회에서 돌봄의 사회화는 가정, 사회, 지역, 시장을 연결하여 돌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재생산 체계를 고민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3.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의 공공성은 돌봄이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지원해야 할 공적인 영역임을 의미한다. 돌봄의 책임이 가족, 특히 여성에게 과중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국가, 지역사회, 시장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돌봄은 시장 논리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기본적

인 사회권으로서 이를 위한 적절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 시장 주도의 돌봄 서비스는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Daly & Lewis, 2000).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돌봄이 본질적으로 공공재적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Folbre(2001)에 따르면 돌봄은 그 사회경제적 가치를 온전히 평가하기 어려운 공공재이다. 공공재의 가치이자 편익은 직접 생산하고 소비한 개인을 넘어, 잠재 성장률이나 고용율의 증가로 환원할 수 없는 사회 전반에 걸친 편익을 창출한다. 돌봄노동의 결과물은 돌봄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당사자 간의 교환과 거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 사회 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가져온다. 돌봄 편익(care benefits)은 가시화되기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나타나고 장기에 걸쳐 창출되므로, 돌봄 노동이 수행되는 시점에서 그 진정한 가치는 과소평가되기 쉽다. 가치가 과소평가되기에 돌봄 노동에 대한 응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 결과 돌봄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이게 되며, 이는 돌봄노동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이러한 공공재적 특성은 일반 경쟁 시장의 원리로는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의 돌봄에 대한 투자와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여성에게 돌봄 책임을 지우는 가부장제 권력 구조의 약화는 무급 혹은 저임금의 여성 돌봄 제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돌봄이라는 공공재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국가와 공동체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

철학자 조안 트론토(Joan Tronto)는 돌봄을 ‘사회적, 생태적 연대를 강화하는 윤리적 실천’으로 규정하며, 돌봄이 없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돌봄은 단순히 노동이나 서비스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윤리적 책임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히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전체가 함께 부담하고 실천해야 하는 영역이다. 돌봄의 사회화는 특정 성별이나 계층이 아닌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책임을 나누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상호 의존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Tronto, 2013).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돌봄의 사회화는 이러한 목표를 벗어나 협소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돌봄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과제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돌봄을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많은 경우, ‘나는 하기 싫고, 저렴하게 남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돌봄은 서비스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가정과 기업, 심지어 국가조차도 돌봄 노동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외주화하며, 돌봄 노동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가와 사회가 돌봄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돌봄을 민영화하거나 가족에게 전담시키는 방식이다. 후자의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시장 논리는 단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돌봄의 장기 편익을 고려하지 못하여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돌봄 서비스가 시장화되면서 정부의 공적 지원이 줄어들 경우, 그 부담은 가족, 특히 여성에게 집중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고 가족 내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노동시장과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정과 시장에서 돌보려는 사람이 감소하면 돌봄의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돌봄의 비용 증

가를 싼값으로 수입한 인력을 돌봄 시장에 투입하여 해결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임기응변은 될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위기를 지연시킬 뿐이다. 돌봄은 무엇보다 돌봄을 조직하고 공급하는 자생적인 공동체의 생성과 발전을 가로막는다. 돌봄을 무보수나 저렴하게 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전담시키는 시장 중심의 사고를 지양하고, 가족, 시장, 기업, 국가가 돌봄을 조화롭게 연결하고 복돋을 수 있는 ‘돌봄 경제’를 중심에 놓고 돌봄의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인간에게는 경제적 자립과 자조 말고도 협동과 돌봄의 욕망도 함께 존재한다. 국가는 모든 사람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권리와 의무로서 돌봄을 핵심적 가치와 역할로 정의해야 한다. 돌봄이 즐겁고 건강하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돌봄 체인(care chain)의 악순환에 발을 내딛기보다는 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공공 돌봄 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돌봄의 공백을 메우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 돌봄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돌봄 노동자에 대한 적정 임금 보장, 근로 조건 개선이 필수적이다.

Ⅲ. 나가며

돌봄의 공공성 확대는 돌봄의 경제적 가치와 윤리적 책임을 균형 있게 통합하며 시장 중심의 경제 모델을 넘어 인간과 생태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돌봄의 보편적 권리 보장과 책임 수행은 단순한 정책 대상 확대를 넘어 사회적 인식과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돌봄은 단순한 노동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공동체를 연결하는 연대와 협력의 핵심적 의미를 지닌다. 돌봄 중심 사회는 고립과 소외를 해소하고, 개인과 집단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젠더와 인종 기반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보다 큰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국가의 재정 투입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최근 한국의 재정 상황은 급격한 고령화, 복지 지출 증가, 경기 둔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재정적자 우려 속에서 복지 정책, 특히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재정 투자를 자연 증가분 이상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노인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는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의 일환으로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포용적 사회 건설의 추진력이 될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결의안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연구윤리
해당없음.

이해상충선언
본 논문에는 이해관계 충돌의 여지가 없음.

사사표기
해당없음.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4). 2024 자살예방백서.
- 이윤경, 이선희, 강은나, 김세진, 남궁은하, 최유정. (2023).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가원, 김영란, 홍승아, 배호중, 김수진, 김보영. (2021). 가족 내 노인 돌봄현황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찬미. (2024). '돌봄노동자 당사자 조직,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설립의 의미. 노인 돌봄의 공공성과 돌봄노동자 주체성'.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 통계청. (2024년 9월 23일). 2022년 기준 장애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 Daly, M. & Lewis, J. (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2), 281-298.
- Folbre, N. (2001). *The Invisible Heart: Economics and Family Values*. New Press.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2024, June 28). Resolution concerning decent work and the care economy.
- Tronto, J. C. (2013).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New York University Press.

The Care Crisis and Alternatives for the Elderly

Jayoung Yoon*

Abstract

With one of the lowest fertility rates and highest elderly suicide rates in the world, the care deficit in our society increases the health risks and social unrest of our citizens. Despite the expans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s, the quality of care services to maintain a decent life is still inadequate. The recent push for greater marketisation of care services and reliance on foreign workers risks undermining the sustainability of care provision. This article highlights the need for a policy direction to make care infrastructure more public and argues that the socialization of care is not just a labor market issue but an essential task for building more inclusive and sustainable societies.

Keywords: Care Crisis, Publicness of Care, Long-Term Care Insurance, Care Work, Super-Aging Society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jayoungy@cnu.ac.kr)